자회사 정책성과 토론회

- 일 시 : 2021년 5월 12일(수) 14:00~16:50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 방 식 : 온라인(YouTube) 생중계
- 주 최 : 한국노동연구원
- 주 관 : 고용노동부

KLI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노동부

∽ 순 서 ∾

14:00~14:15 **개 회**

◑ 개회사 :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 축 사 :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1부 주제발표 : 2020년 자회사 평가 결과

◑ 사 회 :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 소장)

14:15~15:05 **【발제 1】 공공부문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결과보고 : 총평**
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발제 2】 경영계약 부문 평가결과와 시사점
이종수 (노무법인 화평 공인노무사)

【발제 3】 인사/노무 부문 평가결과
김현배 (노무법인 다음 공인노무사)

15:05~15:20 **휴 식**

2부 종합토론

◑ 사 회 : 배규식 (前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15:20~16:40 ◑ 토 론 : 이상훈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부위원장)
배동산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기관 사업팀 팀장)
이정훈 (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 소장)
홍희수 (한국국제협력단 사회적가치경영실 실장)
임윤식 (KTO파트너스 경영관리부 부장)
배영일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 과장)

16:40~16:50 **폐 회**

∽ 목 차 ∾

발제 (1) : 공공부문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결과보고 : 총평 (권순원) ····· 1

발제 (2) : 경영계약 부문 평가결과와 시사점 (이종수) ····· 7

발제 (3) : 인사/노무 부문 평가결과 (김현배) ····· 19

【발제 1】

공공부문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결과보고 : 총평

권 순 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공공부문 자회사 정책성과 토론회

공공부문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결과보고: 종평

권순원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위원회 위원장)

공공부문 자회사평가 결과 종평: 개요

❖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정부가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파견·용역) 노동자 정규직 전환 1단계가 마무리.

- **2017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전환 대상 기관 **853곳에 종사하던 파견·용역 노동자 19만 6,711명 가운데 18만 5,267명이 전환**.
-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관계부처 합동, 2017. 7. 20; 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지 3년여 만에 공공부문에 종사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94.2%가 정규직으로 전환**.

❖ 전환의 방법은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기관별 여건에 따라 ① 직접고용, ② 자회사, ③ 제3섹터(사회적기업 등) 등의 세 가지 옵션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 진행.

- 가이드라인상 **생명·안전 업무에는 직접고용 원칙**이 적용. 그 외 상시·지속 업무의 경우도 대부분 직접고용 형태로 전환되었다.
- 전환 근로자의 **73.7%인 13만 6,530명은 소속 기관에 직접 고용**
- **4만 6970명은 해당 기관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 요컨대, **전체 전환근로자의 25.3%** 즉 1/4 가량이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
- 그 외 사회적기업 등 제3섹터 소속으로 전환된 규모는 1,767명(1.0%) 수준.

❖ 정부는 자회사 전환의 방식을 택하는 경우 용역 위탁 방식의 운영을 지양해 전문적 서비스 제공 조직으로서의 실질적이며 지속가능한 사업이 유지되도록 권고.

-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안」**(이하 '자회사 모델안')을 제시(**2018년 12월 31일**): 주요 내용은 ① **안전성·공공성 확보**(: 공공성과 종사자 고용안정이 담보되는 지속가능한 조직), ② **독립성·책임성 조화**(: 자회사 경영 독립성 보장 및 모기관과의 소통·연계 강화), ③ **전문성 확보 지향**(: 종사자에 대한 서비스 역량강화와 합리적 임금·승진체계 구비) 등

공공부문 자회사평가 결과 총평: 경과

❖ 가이드라인'과 '자회사 모델안' 등에도 불구하고 자회사로 전환된 기관 내외에서 여러 **문제 제기**.

- **전환 이전에 비해 처우가 개선되지 않은 점, 운영 방식에 있어 용역이 민간 위탁과 다르지 않은 점, '자회사 모델안'의 권고대로 운영되지 않는 점** 등이 핵심 이슈.
- 고용노동부는 자회사로 전환된 노동자들이 '가이드라인'과 '자회사 모델안'의 지침대로 대우받고 있는지 조사. 조사결과, 전환 후 고용안정과 일부 근로조건 개선이 있었으나, **자회사의 독립성, 사업성 및 지속가능성 부재에 따른 처우개선의 한계**가 문제로 지적.
- 무엇보다 독립적 전문서비스기관으로 자회사의 성장을 유도하려는 모기관의 역할이 미흡.

❖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는 **'자회사 모델안'에 따라 설립 근거 등을 정비하고 계약 제도 및 관행 혁신을 통해 노동자 처우와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

- '자회사 모델안'의 이행을 위한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관계부처 합동, 2010.3.23.; 이하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핵심 수단으로 **자회사 운영실태를 평가해 그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결정.
- 관계부처(공공부문 비정규직 TF)는 2020년 상반기에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을 거쳐 기준 및 방법 등을 마련
- **2020년 10월부터 평가**를 실시.
- 평가 결과는 **2021년 상반기에 실시중인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 중**
-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이 아닌 기관의 경우 별도의 기관 평가시 적용할 방침.

공공부문 자회사평가 결과 총평: 평가단 구성 및 평가기준

❖ '자회사 평가'(이하 자회사 평가)의 대상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환 방식을 자회사로 선택한 모기관 72개소(자회사 80개소).

- 기관별 보고서는 모기관이 자회사와 협의하여 작성·제출
- 평가위원회는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위원회 운영규정'(고용노동부 예규)에 따라 평가위원장(권순원 교수, 숙명여대 경영학부) 포함 총 10명의 전문가로 구성.
- 위원회는 11개 평가지표를 경영·계약(6개 지표)과 인사·노무(5개 지표) 등 2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각 부문별 팀장을 위촉해 팀 단위로 평가를 수행.

범주	평가지표
제1범주: '안전성과 공공성의 확보 (4개 지표 60점)'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 마련(10점)
	적정 자본금 출연, 설비 이관 등(10점)
	수의계약 개선(20점)
	부당·불공정 계약 시정(20점)
제2범주: '독립성과 책임성의 조화 (5개 지표 50점)'	모·자회사 경영협약 체결(10점)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설치·운영(10점)
	노사 간 협력관계 구축 및 경영 투명성 확보(10점)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 활용 장려(10점)
	자회사 예산에 대한 모기관 책임 강화(10점)
제3범주: '전문성 확보 지향' (2개 지표 20점)	자회사 운영의 전문성 제고 방안 추진(10점)
	합리적 인사관리 및 제도 추진(10점)

공공부문 자회사평가 결과 총평: 평가결과

❖ 평가는 기관별로 작성·제출한 운영실태 보고서(9.25까지 접수)를 통해 서면 방식으로 진행.

- 현장심사 및 대면심사가 배제됨에 따라 보고서 내용의 사실 여부 및 근거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관별 추가 자료 제출 및 보완이 요청되기도 함.
- 평가는 **지표별 이행실적 적절성, 개선노력 정도, 향후 개선계획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별 정성 평가의 방법으로 수행.
- 기관별 평가점수는 **지표(11개, 총점 130점) 평정 결과 합산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산출.

❖ 평가위원회는 중간보고서 작성(11월말) 후 각 기관에 송부, 평가내용 관련 '이의'를 접수(약 5일간), 접수된 기관별 이의 신청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최종보고서 확정.

- 기관이 제출한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의결을 거쳐 기관별 수용 여부를 확정, 회신.
- 평가위원회는 2020년 12월 30일 위원 전원의 의결을 거쳐 평가보고서를 확정, 고용노동부에 제출.
-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 기관의 경우 본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

❖ 평가 결과를 보면, **최고 73.2점, 최저 18.5점, 중간값 53.5점의 정규분포**

- 평균은 50.4점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점수 분포가 형성.
- 전반적인 점수분포가 낮지만, **최초의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인 점**, **차년도 평가부터는 전년도 대비 개선정도 등을 평가**에 반영할 예정인 점 등을 고려.
- 모기관 유형별로 점수 분포를 살펴보면, **준정부기관(57.8점), 공기업(54.9점)**, 지방공기업(51.5점) 순으로 전체 평균보다 높은 반면, 기타공공기관(39.0점)과 공공기관 자회사(26.8점)는 전체 평균 미만으로 나타남.

공공부문 자회사평가 결과 총평: 쟁점

❖ **쟁점 1[평가 기준시점]** 본 평가의 기준시점은 **2020년 8월 30일**이며 해당일까지의 실적을 제출하도록 명시한 바 평가 기준일 시점 이후의 실적 및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평가 및 평정이 반영하지 않음

❖ **쟁점 2[자회사가 아닌 기관에 대한 평가]** 지배구조상 자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부 기관이 평가대상 제외를 요구.

- 위원회는 **에스알, KOSPO영남파워, IBK저축은행 등**이 지배구조상 자회사 아닌 기관에 사업을 위탁하고 있어 평가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
- 논의 결과 본 평가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위수탁기관의 계약근거, 운영실태 및 인사관리 등을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어 **지배구조상 형식적 자회사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계약된 기관이라면 평가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 **쟁점 3[비영리단체의 예외적용 여부]** 본 평가대상 기관 가운데 재단형 기관 8개는 비영리기관임을 이유로 '자본금' 및 '재무 건정성 확보' 등의 평가항목 관련 대부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 위원회는 **기관의 유형을 불문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지속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
- 해당 지표에 대해 **재단형 기관의 경우도 다른 평가대상 기관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

❖ **쟁점 4[이의신청]** 평가위원회는 중간보고서 작성 후 기관에 통보해 **이의신청을 접수 후 필요·타당한 경우 최종보고서 반영**

❖ **쟁점 5[노동관계법 위반 및 명성 위험 체크]** 지표에 따른 기관별 평가 외에 **노동관계법 위반(부당해고, 차별 등) 및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내부갈등으로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된 기관은 평가위원회의 평정회의를 거쳐 **최종평가 총점에서 배점조정**

【발제 2】

경영계약 부문 평가결과와 시사점

이 종 수

(노무법인 화평 공인노무사)

경영계약 부문 평가결과와 시사점

2021. 5. 12.

이 종 수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위원회 위원)

1

I. 지표별 평가결과

0. 전체 평가지표 개요

➢ 평가지표는 「자회사 모델안」의 '안정성과 공공성의 확보', '독립성과 책임성의 조화', '전문성 확보 지향' 등 3가지 평가범주, 11개 단위 평가지표로 구성(총점 130점)

평가 범주	단위 평가지표	비고
안정성과 공공성의 확보	①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 마련(10점)	① 경영계약
	② 적정 자본금 출연, 설비 이관 등(10점)	② 경영계약
	③ 수의계약 개선(20점)	③ 경영계약
	④ 부당·불공정 계약 시정(20점)	④ 경영계약
독립성과 책임성의 조화	⑤ 모·자회사 경영협약 체결(10점)	⑤ 경영계약
	⑥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설치·운영(10점)	⑥ 인사노무
	⑦ 노사간 협력관계 구축 및 경영 투명성 확보(10점)	⑦ 인사노무
	⑧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 활용 장려(10점)	⑧ 인사노무
	⑨ 자회사 예산에 대한 모기관 책임 강화(10점)	⑨ 경영계약
전문성 확보 지향	⑩ 자회사 운영의 전문성 제고 방안 추진(10점)	⑩ 인사노무
	⑪ 합리적 인사관리 및 제도 추진(10점)	⑪ 인사노무

2

I. 지표별 평가결과

1. 자회사 설립 및 위탁 근거 마련

➢ 지표1은 자회사 설립 및 위탁의 근거 마련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

평가내용	작성: 모기관
지표정의	**• 자회사 설립·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배 점	• 비계량 10점
세부 평가내용	•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 근거(위탁사업의 내용)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평가 기준>

▪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를 마련했는지 여부

▪ 근거가 있는 경우 위탁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는지 여부 등

3

I. 지표별 평가결과

1. 자회사 설립 및 위탁 근거 마련

➢ (이행실적) 72개소 중 47개소는 설립 근거 마련, 25개소는 근거없이 설립·운영

➢ 설립 근거 마련 47개소 중 35개소는 정관에 규정, 12개소는 법령에 규정

➢ 다만, 근거를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업무위탁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흡한 설립·위탁근거로 판단

구 분	설치근거 있음				없 음
	정 관		법 령		
	구체적	일반적	구체적	일반적	
기관수(72)	14	21	2	10	25
	35		12		
	47				

4

I. 지표별 평가결과

2. 적정 자본금 출연, 설비 이관 등

➢ 2번 지표는 '적정 자본금 출연, 설비 이관' 등 노력과 성과를 평가함

평가내용	작성: 모기관
2-1 지표정의	• 적정 자본금 출연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배 점	• 비계량 7점
세부 평가내용	• 자회사의 적정 자본금 유지를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예) 자회사 자본금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자료의 충실성, 모기관이 수립한 개선계획의 타당성과 이행 정도
2-2 지표정의	• 업무수행 필수설비 이관 등 자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배 점	• 비계량 3점
세부 평가내용	• 자회사의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설비를 이관하기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

<평가 기준>

▪ 자회사의 자본금 규모 및 모기관 출자 비율
▪ 주요 설비의 자회사 이관 실적 등

5

I. 지표별 평가결과

2. 적정 자본금 출연, 설비 이관 등

➢ (자본금 규모) 72개소에서 설립·운영 중인 자회사 자본금은 평균 7.4억원
➢ 자회사 규모에 따라 자회사 자본금 규모를 차등하여 평가(평가위원회 평정회의에서 결정)

➢ (출자비율) 72개 기관 중 66개소는 자회사에 100% 출자, 3개소는 일부 출자(95%, 90%, 75%), 3개소는 미 출자(타기관으로 자회사 전환 기관)
➢ (주요설비 자회사 이관) 72개소 중 64개소가 설비 이관 및 자본 확충 지원, 8개소는 설비 이관 등 실적 없음

자회사 규모	자회사 자본금 규모	모기관수
300인 이상 (37)	10억 이상	7
	7억 이상 10억 미만	9
	5억 이상 7억 미만	6
	3억 이상 5억 미만	4
	3억 미만	11
	소 계	37
100인 이상 300인 미만 (23)	7억 이상	6
	5억 이상 7억 미만	8
	3억 이상 5억 미만	4
	1억 이상 3억 미만	5
	1억 미만	-
	소 계	23
100인 미만 (12)	5억 이상	3
	3억 이상 5억 미만	5
	1억 이상 3억 미만	2
	0.5억 이상 1억 미만	2
	0.5억 미만	-
	소 계	12
계		72

6

I. 지표별 평가결과

3. 수의계약 개선

➢ 3번 지표는 '수의계약 개선'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함

평가내용	작성: 모기관
3-1 지표정의	• 모기관과 자회사 간 위탁계약의 형식을 합리화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3-2 지표정의	• 자회사와 체결한 계약의 적절성 및 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3-3 지표정의	• 계약대금 지급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평가 기준>

▪ 자회사와의 위탁계약을 단일 통합계약으로 전환했는지 여부

▪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항목의 원가계산가격 100% 적용 여부, 시중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여부, 종전 낙찰률 임의적용 금지 여부

▪ 계약대금 지급시기와 기성검사 및 계약대금 지급기간 단축 여부 등

7

I. 지표별 평가결과

3. 수의계약 개선

<단일 통합계약 전환>

ㅇ **(이행실적) 72**개소 중 **64개소는 통합계약 전환, 8**개소는 미전환

- 통합계약 전환 **64**개소 중 **44개소는 단일 계약으로 통합, 20개소는 복수 계약으로 통합**

  * 자회사 수행 업종, 지역 분포, 계약 수 등이 많은 경우 단기간에 단일 통합계약 전환 어려움

- **미전환 기관 모두** 통합계약으로 **전환계획 수립**

구 분	통합계약 전환		미전환 (모두 전환계획 수립)
	단 일	복 수	
기관수(72)	44	20	8
	64		

8

Ⅰ. 지표별 평가결과

3. 수의계약 개선

<예정가격 산정 합리화①>

○ **(이행실적) 72**개소 중 **36개소**는 **예정가격 산정시 노임단가 항목의 원가계산가격 100% 적용, 36**개소는 **100%** 미달 적용

* △(단순노무용역)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의 경우 시중노임단가(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 적용 △(기타 용역) 콜센터, 주차관리 등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의 유사직종 노임단가 준용

<예정가격 산정 합리화②>

○ **(이행실적) 72**개소 중 **19개소**는 계약기간 중 **시중노임단가 변동 시 노임단가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50**개소는 미조정, 기타* 3개소

* 시중노임단가 변동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없을 만큼 이미 임금수준이 높게 설계

- 조정한 **19**개소 중 **16개소는 시중노임단가 조정분 100% 반영, 3개소는 조정분의 일부만 반영**

구 분	시중노임단가 변동시 조정		미조정	기타 (조정필요가 없을 정도로 임금수준 높음)
	100% 반영	일부 반영		
기관수(72)	16	3	50	3
	19			

9

Ⅰ. 지표별 평가결과

3. 수의계약 개선

<예정가격 산정 합리화③>

○ **(이행실적) 72**개소 중 **48개소는 종전 낙찰률 미적용, 24**개소는 종전 낙찰률 적용**(**현행 유지**)**

- 종전 낙찰률 미적용 **48**개소 중 **18개소는 낙찰률 미적용(**예정가격 그대로 계약체결**), 30개소는 일부 개선(**종전 낙찰률보다 상향된 낙찰률 적용**)**

구 분	종전 낙찰률 미적용		종전 낙찰률 적용 (현행 유지)
	낙찰률 미적용 (예정가격 그대로 계약체결)	일부 개선 (종전 낙찰률보다 상향 적용)	
기관수(72)	18	30	24
	48		

10

Ⅰ. 지표별 평가결과

3. 수의계약 개선

<계약대금 지급시기 개선>

ㅇ **(이행실적) 72**개소 중 **25개소는 계약대금 지급시기 개선, 47**개소는 미개선**(**현행 유지**)**

* (현행) 월별 후지급 → (개선) 월별·분기별 선지급 또는 선금·잔금 지급 등

- 계약대금 지급시기를 개선한 **25**개소 중 **2개소는 월별 선지급, 20개소는 분기별 선지급, 3개소는 선금 • 잔금 지급**

구 분	계약대금 지급시기 개선			미개선 (현행 유지)
	선지급		선금·잔금	
	월별	분기별		
기관수(72)	2	20	3	47
	25			

<계약대금 지급기간 개선>

ㅇ **(이행실적) 72**개소 중 **41개소는 계약대금 지급기간 단축, 31**개소는 미개선**(**현행 유지**)**

* 지급 절차(기간): 계약 이행 여부 확인(기성검사, 14일 이내) → 계약대금 지급(5일 이내)

구 분	**계약대금 지급기간 개선**(단축)	**미개선**(현행 유지)
기관수(72)	41	31

11

Ⅰ. 지표별 평가결과

4. 부당·불공정 계약 시정

➢ 4번 지표는 '부당 불공정 계약 시정'의 이행정도를 평가함

평가내용	작성: 모기관
지표정의	• **부당·불공정 조항 자율시정의 이행정도를 평가한다.**
배 점	• 비계량 20점
세부 평가내용	• 모기관과 자회사 간 위탁계약서에 존재하는 부당·불공정 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예) △자회사의 경영·인사권 침해 △부당한 업무지시 △노동3권 제약 △과도한 복무규율 △부적절한 해제·해지 사유 등

<평가 기준>

▪ 부당·불공정 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 △ 자회사의 경영·인사권 침해

△ 부당한 업무지시

△ 노동3권 제약

△ 과도한 복무규율

△ 부적절한 해제·해지 사유 등

12

Ⅰ. 지표별 평가결과

4. 부당·불공정 계약 시정

○ **(이행실적)** 부당 • 불공정 조항이 **전반적으로 많이 시정**되었으나 일부 부당 • 불공정 사례* 및 개정된 계약 규정 미반영 사례** 등 존재

* △부당한 업무지시(계약서상 구체적 과업내용이 없더라도 모기관이 임의로 지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모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횟수 제한 없는 재청소 또는 특별청소를 시킬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조항 등)

△부적절한 해제·해지 사유(모기관의 내부 사정이나 일방적·자의적 판단에 의한 계약해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조항 등)

** △「용역계약 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의 근로자 교체 요구 조항(제11조제2항) 개정('20.6.18.)에도 여전히 개정 전 내용의 조항 존재 (개정전) 모기관이 자회사에 직원 교체 요구시 즉시 교체 → (개정후) '교체 요구 가능'

13

Ⅰ. 지표별 평가결과

5. 모·자회사 경영협약 체결

➢ 5번 지표는 '경영협약'을 구비하였는지를 평가함

평가내용	작성: 모기관, 자회사
지표정의	• 자회사 경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경영협약을 구비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배 점	• 비계량 10점
세부 평가내용	• 자회사 경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경영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예) 자회사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조항, 교육훈련에 대한 예산·인력 지원 조항,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보장하는 조항, 모·자회사 공동 이익 증진 방안을 담은 조항 등의 구비 여부

<평가 기준>

▪ 모·자회사 간 경영협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 체결한 경우 경영협약 내용*이 충실한지 여부

* △ 자회사의 자율적 운영 보장

△ 교육훈련에 대한 예산·인력 지원

△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 보장

△ 모·자회사 공동 이익 증진 방안 등

14

I. 지표별 평가결과

5. 모·자회사 경영협약 체결

ㅇ **(이행실적) 72**개소 중 **40개소 모기관이 자회사와 경영협약 체결, 32**개소는 미체결

- 다만 미체결 **32**개소 중 **경영협약이 아닌 모·자회사 간 계약 또는 협약** 등을 실적으로 제출한 경우 **(13**개소**), 내용에 따라 10개소에 점수 부여(3**개소는 내용 미비로 경영협약으로 불인정**)**

* 경영계약서, 경영관리 약정서, 인력파견 및 지원에 관한 협약서 등

* 경영협약이 아닌 모·자회사 간 계약 또는 협약 등 제출

구 분	경영협약 체결	미체결	유사 형태*
기관수(72)	40	32	13

15

I. 지표별 평가결과

9. 자회사 예산에 대한 모기관 책임 강화

➢ 9번 지표는 '모기관의 적극적 지원 정도'를 평가함

평가내용	작성: 모기관
지표정의	• 자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모기관의 적극적인 지원 정도를 평가한다.
배 점	• 비계량 10점
세부 평가내용	① 자회사의 원활한 운영에 필수적 수준의 행정 지원을 위한 노력과 성과(2점) *** 자회사의 적정 행정인력 구비 여부, 모기관의 예산 지원현황 및 향후 계획** ② 자회사의 적절한 관리비·이윤의 보장을 위한 노력과 성과(6점) ③ 모기관의 사업이관 관련 부당 정책*을 없애기 위한 노력과 성과(2점) * 적자사업의 자회사 이관, 흑자사업의 모기관 회수 등

<평가 기준>

- 필수적 수준의 행정지원 여부
- 적절한 관리비·이윤의 보장 여부
- 자회사로 적자사업을 이관하거나 반대로 자회사의 흑자사업을 모기관으로 회수하는 등 모기관의 부당한 관행 여부 등

16

I. 지표별 평가결과

9. 자회사 예산에 대한 모기관 책임 강화

<필수적 수준의 행정지원>

ㅇ **(이행실적) 72**개소에서 설립·운영 중인 자회사 모두 행정 전담 조직 구성·운영

<적절한 관리비·이윤 보장>

ㅇ **(이행실적) 72**개소 중 **6**개소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총 계약금액 중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최대비중**(각각 **9%, 10%**) **보장**

<모기관의 부당한 관행 개선>

ㅇ **(이행실적)** 자회사로 적자사업을 이관하거나 반대로 자회사의 흑자사업을 모기관으로 회수하는 등 **부당한 관행은 확인되지 않음**

구 분	국가계약법 규정 최대비중 보장 (일반관리비9%,이윤10%)	최대비중 미보장							
		일반관리비				이 윤			
		8% 이상	4.5~7.5%	4.5% 미만	미명시	9% 이상	5~8%	5% 미만	미명시
기관수(72)	6	12	27	14	13	11	19	20	16
		66							

17

II. 시사점

구분	시사점
[평가지표 1]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 마련	• 자회사 설립·운영 근거가 없거나 위탁사업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 필요 • 법령에 근거가 있으나 위탁사업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에도 정관에 구체적으로 업무위탁 내용을 명시 필요
[평가지표 2] 적정 자본금 출연, 설비 이관 등	• 자본금이 적을수록 부실 운영 및 경영 투명성·책임성 결여 등 문제 소지가 있으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본금 증액 필요 • 자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설비가 이관되지 않을 경우 자회사 안정적 운영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향후 개선 노력이 필요 • 우수사례 사례 공유, 필수 설비 이관 및 자본 확충 지원에 소극적인 기관 대상 컨설팅 실시 필요
[평가지표 3] 수의계약 개선	• (단일통합계약 전환) 전환 과정 애로사항 청취 등 기관별 전환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지도 필요 • (예정가격 산정 합리화1) 우수사례 공유 및 컨설팅 지원,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지도점검 추진 필요 • (예정가격 산정 합리화2) 시중노임단가 변동에도 조정하지 않은 53개 기관에 대해 조정할 것을 안내, 필요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지도점검 추진 필요 • (계약대금지급시기 개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지급(월별·분기별) 또는 선금·잔금 지급 권고 필요 • (계약대금 지급기간 개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금지급 기간 단축 권고 필요

18

II. 시사점

구분	시사점
[평가지표 4] 부당·불공정 계약 시정	• 부당·불공정 계약 관련 조항 시정 권고 필요
[평가지표 5] 모·자회사 경영협약 체결	• 컨설팅 지원 필요
[평가지표 9] 자회사 예산에 대한 모기관 책임 강화	• 우수 운영사례 공유 필요 •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관리비·이윤 보장 권고 필요 • 제도적(경영협약 등)으로 부당한 관행 예방 노력 권고 필요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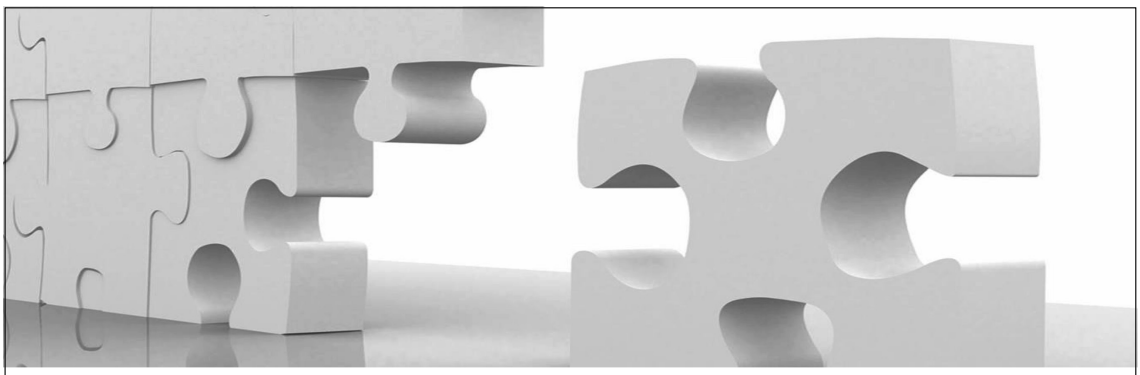

End of Document

20

【발제 3】

인사/노무 부문 평가결과

김 현 배

(노무법인 다음 공인노무사)

공공부문 자회사 정책성과 토론회

자회사 평가
인사/노무 부문 평가결과

2021. 5. 12.

김 현 배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위원회 위원)

순 서

1~5. 인사노무팀 지표별 총평 및 사례

6. 인사/노무 부문 총평

7. 한계 & 개선 방향

1. 지표 6 :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설치 운영

<평가 기준>

-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설치했는지 여부
- 설치시 설치 근거 여부 및 운영 내용
- 자회사 노동자대표의 대표성 확보 여부 등

3

1. 지표 6 : 총평

72개 기관 중 27개는 모자회사 공동협의회 설치, 45개는 미설치

설치한 27개 중 형식적 운영, 자회사 노동자 대표성 미확보 사례

- 형식적 운영 : 설치 후 2차례 운영, 연 1회 정기회의 운영 등
- 대표성 미흡 : 사측이 일방적으로 대표 지정, 임기 없이 선정 등

미설치 45개 중 15개는 설치 추진 중

4

1. 지표 6 : 사례

노사공동협의회 설립근거를 경영협약에 포괄 조항으로 둔 경우

모기관의 내부 결재문서로만 남겨둔 경우

평가 대상기간 내에 실제 운영을 하지 못한 경우

자회사의 근로조건 등만 안건으로 삼고
모자회사의 공동이익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일방적으로 근로자대표를 지정한 경우

근로자대표의 임기를 두지 않은 경우

5

2. 지표 7 : 노사간 협력관계 구축 및 경영투명성 확보

<평가 기준>

- 자회사의 노사협의회 설치·운영 여부
-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실시 여부
- 경영정보 공시를 통한 투명성 확보 정도 등

6

2. 지표 7 : 총평

72개 기관 중 65개 자회사는 노사협의회 설치, 7개는 미설치
- 노사협의회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이어서 다수 기관이 이행
- 30인 이하 미의무기관도 정책 취지를 감안하여 마련하도록 권고

법적 근거 미비, 모기관 미도입 등으로 노동이사제 도입기관 없음
-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 기관은 5개
- 대표이사 단독체제 기관(10개)은 이사회 구성시 도입 권고

45개 자회사는 경영정보 공시, 27개 자회사는 미공시
- 공시 기관 중 단순히 기관 소개 및 사업 안내 수준이 다수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사항 참조하여 공시하도록 유도

7

2. 지표 7 : 사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운영한 경우

단협에 노동이사제 도입 명시했으나 실제 도입은 안한 경우

경영정보 공시한 곳은 대부분 기재부 경영평가를 받고 있는 경우

8

3. 지표 8 :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 활용 장려

<평가 기준>

- 모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자회사 노동자 복리후생 증진 여부
- 모·자회사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을 위한 노력과 성과 등

9

3. 지표 8 : 총평

72개 중 15개는 모기관 기금을 활용해 자회사 복리후생 지원

57개 기관은 지원실적 없음
- 그중 대부분은 기금 미설치 기관

지원 기관과 미지원 기관의 점수 차가 상당

10

3. 지표 8 : 사례

자회사에 따로 기금을 설립한 경우

모기관이 조성한 재원(성과급 반납)을 자회사 기금에 기부한 경우

자회사 기금 설립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인가를 신청한 경우

기금 활용해 콘도 이용, 온누리상품권 지급, 휴양시설 사용권 이관

기본재산 일부를 자회사 근로자의 복지재원으로 활용한 경우

자회사 수혜금액을 모기관 수혜금액의 25% 이상으로 의결한 경우

11

4. 지표 10 : 자회사 운영의 전문성 제고 방안 추진

<평가 기준>

-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등을 위한 모기관의 인력·예산 지원 여부
- 자회사 근로자의 커리어 경로 개발 및 제도 시행을 위한 모기관 노력 정도
- 모·자회사 노사담당 합동워크숍 개최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과 성과 등

12

4. 지표 10 : 총평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실적 미흡

자칫 불법파견 논란으로 이어질 것을 염려한 것에 기인 추정

우수사례 공유,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 통해 지표 보완 필요

13

4. 지표 10 : 사례

모기관 전담부서/인력이 계약 등 일반관리 정도만 수행하는 경우

다수 부서가 협업하는 형태로 전담부서가 없는 경우

예산지원을 관리비 내에 포함하여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중장기 관리방안 없이 단기예산 지원만 하는 경우

법정필수교육 중심으로 교육훈련제도를 단순 설계한 경우

노사담당 합동워크숍을 조직문화 개선노력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조직문화 개선 논의 후 확산하는 절차나 과정이 미비한 경우

14

5. 지표 11 : 합리적 인사관리 및 제도 추진

<평가 기준>

-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전심사제 준용을 위한 노력과 성과
-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한 공정성 제고장치 도입 및 실시 여부
-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및 적정수준 임금 지급을 위한 노력과 성과 등

15

5. 지표 11 : 총평

72개 기관 중 29개는 비정규직 사전심사제 도입, 43개는 미도입
- 도입한 29개 중 제도화한 기관은 26개, 준용한 기관은 3개

72개 기관 중 51개는 CEO 선발제도 도입, 21개는 미도입
- 도입한 51개 중 제도화한 기관은 36개, 준용한 기관은 15개

직무중심 임금체계인 자회사는 61개, 연공급은 11개

16

5. 지표 11 : 사례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사전심사제를 미도입한 경우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직무급제 도입 노사교섭 중이거나 노사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전환 전에 비해 임금수준 인상효과는 명확

복지포인트/명절상여금/식비 등 처우개선 수준은 자회사별 차이

17

6. 인사/노무 부문 총평

전반적인 평가결과(점수)는 상당히 저조

노사관계 관련, 법/제도 개선 등 관련 지표(6,7,8)에서 매우 저조
: 최저는 지표 8.

합리적 인사관리 지표(11)는 양호
- 사전심사제 도입, CEO 선발제도 도입, 직무급 도입

자회사 초기 단계로 노사관계가 후순위로 밀린 경향

자회사의 관리인력 부족, 모기관의 기득권 유지 경향

18

7-1. 한계

- 정성적 종합 평가보다는 정량적 단순 평가의 경향을 가짐
  : 정책준수 여부 확인, 평가부담 경감 등을 감안한
  첫 평가의 지표설계적 한계

- 자회사 설립 초기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회사의 관리 및 평가대응 역량, 모·자회사 협업 등에 한계 존재

- 코로나, 다수 피평가기관 등으로 현장실사 부재,
  다수 피평가기관에 대응하는 평가위원 구성 부족 등에 따른
  심층적 평가 한계

- 제한적 평가결과 활용에 따른 기관의 적극적 대응 필요성 부족

19

7-2. 개선 방향

-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미설치, 부실운영 등에는 패널티 부여,
  실질 운영에는 가점 등으로 '정성적 평가 강화' 필요

- 노사협의회 미설치, 부실운영 등에는 패널티 부여,
  실질 운영에는 가점 등으로 정성적 평가 강화 필요
-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는 실시하도록 유도 필요
- 주요 경영정보는 반드시 공시하도록 유도 필요

- 사복기금을 활용한 지원에는 가점,
  그 외 처우개선 지원노력 반영 필요

20

7-2. 개선 방향

- 전문성 제고와 관련한 '지원'과 '관여'의 한계를 고려해
  적절한 사례/예시 제시를 통한 모기관의 적극적 노력 유도 필요

- 직무급 운영에 따른 임금수준/임금격차의 적정성,
  처우개선 효과의 적절성 등에 대한 평가 필요

- 중복성 지표 통합
- 운영 실태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
- 정성적 평가 강화

21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